

안성시 반려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이고 의지, 교감하여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5.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 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복지와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 및 시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안

성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이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제척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척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
3. 자문 안전과 자문 내용

④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동물등록업무(변경등록을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및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 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와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여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제16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인사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의견을 들어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 지정의 유효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그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동물보호센터 감독 등) 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여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보호하여야 하며, 그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 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구조·보호한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할 경우 그 분양 또는 기증을 받는 자에게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는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동물의 분양·기증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분양·기증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 또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기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분양·기증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5조(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① 시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마리당 한 번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동물 보호업무 관련 사업을 하는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 보호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홍보·지원 및 위원회의 활동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반려견 놀이터·산책로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산책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반려견 놀이터·산책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관련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4. 중성화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5. 2마리 이상 동물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각 100분의 50
6.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이내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제23조제3항 관련)

1. 산출 계산식

$$1\text{마리 당 1일 평균 동물보호비용} \times \text{총 보호기간}$$

※ 1마리 당 1일 평균 동물보호비용은 안성시의 여건(실정)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축종별(개, 고양이 등), 크기별(대형, 중형, 소형) 등으로 세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호비용 산출은“ 총 보호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을 토대로 산정한다.

2. 총 보호비용의 세부 산출기준

가. 일반 관리기준

1)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그 밖의 동물	-	해당동물의 상태에 따라 보호센터의 장이 정함

2) 인건비

가) 포획비는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보호·관리비(1마리/1일)는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 일반운영비는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그 밖에 보호관리에 필요한 물품 금액 등으로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치료비

1)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의 진료수가에 따른다.

2)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협의하여 별도의 치료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비용

1) 수송비는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2)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는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3) 사체처리비는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을 따른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